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4. 12. 24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4. 11. 29
- 다. 회부일자 : 94. 11. 29
- 라. 상정일자 : 94. 12. 22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과장 이남용)

가. 제안사유

-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외국인에게 관망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음.
- 국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수준 증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함.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함.
- 불결하고 시설정비·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 아래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안 제4조)

-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함. (제5조, 제6조, 제10조)
- 공중화장실 이외의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함. (안 제2조)
-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14조, 제15)
- 일정 시설기준·전담관리인 배치·편의용품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16조)
- 개선명령 이행기간에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허 면)

가. 검토과정

- 제출연월일 : 94년11월29일
- 제출자 : 달서구청장(청소과소관)
- 검토기간 : 94년 12월 16일 ~ 12월 19일

나. 관련근거법령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도·소매진흥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자연공원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도시공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 도로법 및 석유사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다.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상가·공원·도로휴게소·주유소등의 공중이용화장실을 체계화하고 관리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로 전문 19조부칙4조로 구성하고 있음
-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상당수가 시설이 낙후하고 불결하여 이용시 시민의 불편이 있어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공중화장실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속적인 청결상태

를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불편을 다소 해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배치되는 조항은 없으며, 주민편익을 위한 조례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주유소협회에서 공중화장실설치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건의서가 의회에 접수되어 있음. 이유는 주유소에 설치된 화장실은 주유소의 이용객과 통행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설치한 사유재산으로 공중화장실과 동일시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을 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설치기준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대구시 주유소허가 기준 및 고시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상위법에 고시되어 있어 조례(안)에 제외시키지 못함.
- 의원해외연수시 외국에는 공원이나 도로변에 유료화장실을 동전으로 분이 개폐되도록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본 조례도 간이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용의는
- 좋은 의견이지만 본 조례상으로 나타난 공중화장실은 시장, 상가, 주유소, 어린이공원 등 87개소가 설치되므로 시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첨부 :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부.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안)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 (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
2.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
3.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4.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5.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6. 석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7. 기타 구청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 2 장 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체면적은 33㎡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3개, 여자용5개) 이상, 소변기 5개 이상 또는 5인용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cm 이상, 세로 115cm 이상(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cm 이상)일 것.
3. 수세식이어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또는 롤러타월기), 100룩스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붙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여자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6조(기타시설)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이외에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시설의 유지·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일 3회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1회이상 도색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상황과 유지·관리상황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4 장 시설 개선 명령

제13조(시설점검)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2회(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명령) 구청장은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청결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설치·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서를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승인

제16조(유료화장실 승인)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담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3. 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 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시설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구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붙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과태료 부과징수등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은 [별표]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 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 차	2 차	3 차
1.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 가. 제5조 제1, 2, 3, 4호 위반 나. 제5조 제5, 6, 7호 위반	제 5 조	20	40	60
		10	20	30
2. 관리인 미지정 및 청결관리에 소홀히 한 때	제 8 조	10	20	30
3.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지 아니한 때	제 9 조	10	20	30
4.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한 때	제 10 조	20	30	50
5.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 17 조 (제2호내지제4호)	20	30	50

공 중 화 장 실 관 리 카 드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관 리 번 호	□□-□□□□□□	소 재 지										
지 역 구 분		실 연 도	책 임 소 속	직 위 · 직 명						사 용 료		
관 리 주 체			공 무 원 성 명		변 소 의 형 태		무 료 유 료					
관 리 인	(전 화)		소 변 기	대 인 소 인 개	수 세 식 수 거 식	수		약 품				
규 모	대 (㎡)	지 (㎡)	간 (㎡)	평	대 변 기 남 개	여 개	화 장 지 비 (액 체 비 누)	수	진			
편 의 시 설 용 품	세 면 기	에 어 타 월	환 풍 기	대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개	대	대	대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시 설 관 리 상	년 월 일	관 리 사 항	금 액 (천 원)	년 월 일	관 리 사 항	금 액 (천 원)	년 월 일	관 리 사 항	금 액 (천 원)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약 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번호 : 구단위 동별 일련번호 부여 ○ 지역구분 : ① 시장 ② 공원 ③ 유원지 ④ 도로변휴게소 ⑤ 시가지 ⑥ 주유소 ⑦ 운동장 ⑧ 기타 ○ 관리주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공단, ○○번영회, 개인등)

[별지 제2호서식]

공중화장실 개선명령서		명령서번호	
		제 호	
수 명 인	화장실소재지		
	성명(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개 선 명 령 사 항			
개 선 이 행 기 간		년	월 일까지
<p>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선을 명령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직할시달서구청장 인</p>			

[별지 제4호서식]

유료화장실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시설현황	소재지		관리주체								
	전담관리인			(전화번호 :)		설치년도					
	다른법령에 의한 화장실 설치의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시설내역	면적규모		㎡		이용인원 (일 평균)						
	대 변 기		남	여	소 변 기						
			개	개							
	편의시설· 용품		세면기	에어타월	환풍기	화장지		비누		약품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p>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대구직할시달서구청장 귀하</p>											
<첨부서류> 1. 유료화장실 운영계획서(운영시간·사용요금등 명시) 1부 2. 화장실의 설치장소 및 내부구조도 1부										수수료없음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승인 제 호

유료 화장실 승인서

대표자	상호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담 관리인		(전화번호 :)			
설치 장소					
시설 내역	대 변 기		소 변 기		
	남	여	개		
	개	개			
	세 면 기		에 어 타 월	환 풍 기	
	대		대	대	
1 회 사 용 료		원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대구직할시달서구청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 조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대구직할시달서구청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개인통지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 제 조제 항	성명 : 남 부 의무자 주소 :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인

(수납은행보관용)

제 호 과태료영수필통지서①	위반사항 : 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 제 조제 항	성명 : 남 부 의무자 주소 :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구 통 보 용)

제 호 과태료영수필통지서②	위반사항 : 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 제 조제 항	성명 : 남 부 의무자 주소 :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인
				대구직할시 시 금고 귀하		

(개인보관용)

제 호 과태료납부영수증	위반사항 : 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 제 조제 항	성명 : 남 부 의무자 주소 :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관계법령 발췌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법 률

〈제16조〉 -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변소를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24조〉 - 공중변소의 설치·관리기준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변소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면적은 32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5개이상 또는 5인용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이하 "변기칸"이라 한다)의 규모는 가로 85센티미터 이상 세로 115센티미터이상(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수세식이어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변소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붙여야 한다.
5.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변소의 유지·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1일 3회이상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공중변소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 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소매업진흥법

법 률

〈제6조〉 - 시장의 개설허가

① 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개설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일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매장면적 및 시설을 갖추 것.

시 행 령

〈제8조〉 - 시장의 배장면적 및 시설기준

제2항 제5호 : 위생시설(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수세식화장실, 오물수거장, 농수산물 세척장)

3. 자연공원법

법 률

〈제38조〉 - 청결의무

④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변소와 쓰레기용

기를 설치하여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변소와 쓰레기용기의 설치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 제23조 〉 - 공중변소등의 설치기준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변소와 쓰레기용기의 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공중변소는 수세식으로 하고,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용수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산의 정상에 설치하는 등 수세식으로 하기가 부적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쓰레기용기는 철·시멘트등 견고한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도시공원법

□ 법 률

〈 제2조 〉 - 정의

2. "공원시설"이라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사. 주차장, 매점, 변소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 시행규칙

〈 제6조 〉 - 공원시설의 설치기준

제1항 제2호 :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정의자, 그네, 미끄럼틀, 사자, 정글짐 및 변소는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한다.

5. 도 로 법

도로변의 휴게소 공중화장실

6. 석유사업법

법 률

〈제12조〉 - 석유판매업의 허가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 및 허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 행 령

〈제9조〉 -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 등

-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1 : 주유소의 허가기준

- 화장실 시설의 위치, 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